

따뜻하고 섬세한 배려, 우리가 먼저!
한 국 관 광 협 회 중 앙 회
KOREA TOURISM ASSOCIATION

(우)100-180 서울 중구 다동 한국관광공사 8층 / 전화(02)2079-2427 / 전송(02)757-7489
 회원지원국 국장 김재걸 과장 이승택 대리 안승화 ahn1202@gmail.com

문서번호	회원 2012 - 471호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12. 12. 10.	접수	일자	결재	
경유			시간		
수신	수신처 참조		번호	공람	
참조	사무국장	처리과			
제목	관광숙박업소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안내	담당자			

1.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협회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시행2012.12.8)』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5321(2012.12.6) 관광숙박업소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질의 회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귀 협회 회원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9호에 따라 관광숙박업소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 나.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의 로비, 복도, 계단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전면 금연 실시다. 관광숙박업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카지노업 등)들은 법령 적용에서 제외라. 객실의 경우 관련 법령 적용에서 제외
 - 마. 업소 내 부대시설로 운영되는 영업장(음식점, PC방, 목욕장 등)의 경우 개별 법령 적용
- ※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개정된 법 취지에 맞게 해당 시설에서는 흡연실을 옥내·외에 별도 설치할 수 있으며, 객실 및 부대시설에 대한 흡연 관리 철저 필요. 끝.

한 국 관 광 협 회 중 앙 회
 회 장 남 상 만
<http://www.ekta.kr>

